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8699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구합6661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14.
판 결 선 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7. 4.자 재산세 13,091,480원, 지역자원시설세 6,189,520원, 지방교육세 2,618,29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6. 9. 5.자 재산세 28,350,120원, 지방교육세 5,670,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6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국가의 사무인 교도소 운영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망교도소는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원고가 국가의 지휘, 통제 및 관리·감독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교도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에 따르면 원고는 국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공하고도 이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의 재원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는 국가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6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취지와 문언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 소정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소정의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준하는 정도로 행정주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❶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 보유 사실 자체만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은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당해 재산을 소유한 자에 대한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6

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❷ 지방세법은 제109조 제2항 본문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 및 '공공용'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 자체에 '공용' 및 '공공용'이라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용어의 해석은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❸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의 체계와 문언내용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가 등이 상당 기간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당해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그 이익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반면에, 당해 재산의 소유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담세력이나 과세사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 등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당해 재산의 소유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당해 재산의 사용대가를 받는 이상 그 소유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6

가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에서 수익을 얻는 등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본문과 단서의 형태로 배열되어 있지만, 그 본문이나 단서 모두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사실상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의미이다)가 당해 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되, 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즉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은 소유권의 여러 권능 중 사용과 수익이 모두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인 반면에, 그 단서는 소유권의 여러 권능 중 사용은 제한되어 있지만 수익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해 재산의 소유자가 그 재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적용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그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은 공용재산을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규정하는 한편(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공공용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2호).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공용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으로 규정하는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2항 제1호), 공공용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6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2항 제2호). 이와 같이 국유재산법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는 단순히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규율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규율하고 있다(토지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그 스스로 자신 소유의 토지를 공원, 도로 등으로 조성한 다음 실제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공공용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국유재산법 등이 단순히 재산의 사용용도의 관점에서만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주체의 직접성, 즉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❺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 사용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고 제한하여 규정한 것은, 단순히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재산이 아니라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교도소법'이라 한다)과 위 법률 제3조에 터 잡아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6

소망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민영교도소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편, 민영교도소법 제23조, 제3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운영경비지원이나 업무인력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의 관리·감독이나 경비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편 원고가 위탁받은 교정업무가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위와 같은 교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행정상의 관리·감독이나 경비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영교도소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후견적 조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국가가 국유재산법 소정의 공용재산에 준하는 정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두20239 판결과 대법원 2008두15039 판결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 자체'를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사용하게 한 사안이다. 반면에 이 사건은 원고가 국가로부터 '공적 업무'를 위탁받은 다음 위탁받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사안이다. 이와 같이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이므로, 그 재산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는지, 그 재산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재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6

세 비과세대상 혹은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운영경비에 재산세 상당액이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원고가 재산세 상당액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나 관련 행정규정(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광국

판사 김종기

판사 송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6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85조(한[redacted]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한[redacted]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85조(한[redacted]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6

■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업무(교정업무)"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 교정(교정)·교화(교화), 직업교육, 교도작업(교도작업), 분류·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자(수탁자)"란 제3조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교정법인"이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민영교도소등"이란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을 말한다.

제3조(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조직·시설·재정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방법, 선정절차, 그 밖에 수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담당할 업무와 민영교도소등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재산)

①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도·증여 또는 교환
2. 용도 변경
3. 담보 제공
4.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③ 교정법인의 재산 중 교도소등 수용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6

국가 또는 다른 교정법인 외의 자에게 매도·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1조(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

① 민영교도소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교도소등에 준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할 때 시설 안의 수용자를 수용·관리하고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민영교도소등의 검사)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해당 시설이 이 법에 따른 수용시설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교정법인에 대하여 보정(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검사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운영 경비)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지급 경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
2. 민영교도소등의 운영 경비
3.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드는 경비

제24조(수용 의제)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소등에 수용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지원)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해당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장의 신청을 받아 민영교도소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6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영교도소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민영교도소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교정법인 및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항상 소속 직원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검사)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용 현황
2. 교정 사고의 발생 현황 및 징벌 현황
3. 무기 등 보안장비의 보유·사용 현황
4. 보건의료서비스와 주식·부식의 제공 현황
5. 교육·직업훈련 등의 실시 현황
6. 외부 통학, 외부 출장 직업훈련, 귀휴(귀휴), 사회 견학, 외부 통근 작업 및 외부 병원 이송 등 수용자의 외부 출입 현황
7. 교도작업의 운영 현황
8. 직원의 인사·징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위탁업무의 감사)

①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끝 -